

의 안 번 호	제870호
의 결 연 월 일	. . . (제 회)

충청북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
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발 의 자	이옥규 의원 등 8인
발의연월일	2025년 3월 4일

충청북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이옥규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870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25년 3월 4일

발 의 자 : 이옥규, 김꽃임, 박경숙, 유재목,
이의영, 이종갑, 임병운, 이상식

1. 제안이유

- 조례의 입법취지를 반영하여 목적과 사용하는 용어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명확히 하고, 노동안전보건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포함 내용을 구분하여 충청북도가 효율적으로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조례의 입법취지를 반영한 목적 조항 자구 수정(안 제1조)
- 조례에 사용하는 정의 규정 정비(안 제2조)
- 노동안전보건 기본계획 포함 사항 정비 및 시행계획 포함 사항 신설(안 제6조)

3. 조례안 : 붙임

4. 참고사항

- 관계 법령 : 붙임
- 조례안예고 : 2025. 3.
- 협 의 : 경제통상국 일자리정책과
- 비용추계 : 붙임

충청북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노동안전보건을 강화하는데”를 “노동안전보건 지원에”로, “증진함”을 “향상시키는 것”으로 한다.

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4호 중 “노동자에게 노무를 제공받아”를 “노동자를 사용하여”로 한다.

2. “노동안전보건”이란 산업재해의 발생으로부터 노동자의 생명·안전·건강과 사업주의 잠재적 재산상 손실이 보호되는 상태를 말한다.

제6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
2. 산업재해 발생 및 지역별·업종별 등 실태 자료수집 및 분석
3. 산업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한 지역별·업종별 등 대책
4.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사업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
5.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방안
6.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에 필요한 사항

제6조제2항제7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

“충청북도”를 “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충청북도”로 하며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고용노동부 등을 통한 도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지역별·업종별 등 실태 분석
2. 사업주 및 노동자에 대한 노동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
3. 노동자들의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
4.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사업에 필요한 예산
5. 산업재해 예방활동을 위한 노동안전지킴이단 구성 및 운영
6.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전년도 사업시행 결과를 분석하여 반영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산업현장과 노동 환경의 변화에 맞춰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<u>노동안전보건을 강화하는데</u>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을 <u>증진함</u> 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 ----- ----- <u>노동안전보건</u> <u>지원에</u> ----- ----- <u>향상</u> <u>시키는 것</u> -----.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제2조(정의) ----- -----.
1. (생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“ <u>노동안전보건</u> ”이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동자의 <u>노동안전과 신체적·정신적 건강을 유지하는 활동 및 사업주의 잠재적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지 않게 되는 상태를 말한다.</u>	2. “ <u>노동안전보건</u> ”이란 산업재해의 발생으로부터 노동자의 <u>생명·안전·건강과 사업주의 잠재적 재산상 손실이 보호되는 상태를 말한다.</u>
3. (생략)	3. (현행과 같음)
4. “사업주”란 계약의 형식을 불문하고 <u>노동자에게 노무를 제공받아</u>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.	4. ----- --- <u>노동자를 사용하여</u> --- ----- -.
5. (생략)	5. (현행과 같음)
제6조(노동안전보건계획 수립) ①	제6조(노동안전보건계획 수립) ①

(생략)

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적용대상의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및 노동자 참여 확대방안
2. 노동환경 취약분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지원사업
3. 충청북도형 분야별 노동안전보건대책 마련
4. 충청북도형 사업장 위험·유해 도급금지 등 관련 규정 마련
5. 충청북도형 노동안전보건 가이드라인, 매뉴얼 제시
6. 사업장 이행실태 현장점검 및 교육, 컨설팅, 시정조치
7. 산업재해 예방활동을 위한 노동안전지킴이단 구성 및 운영
8. 노동안전보건 교육 및 시책에 대한 홍보
9. 노동자의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
10.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

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-----.

1.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
2. 산업재해 발생 및 지역별·업종별 등 실태 자료수집 및 분석
3. 산업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한 지역별·업종별 등 대책
4.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사업을 위한 자원 확보 방안
5.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방안
6.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에 필요한 사항

<삭 제>

<삭 제>

<삭 제>

<삭 제>

고 인정하는 사항

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충청북도 산재예방 시행계획(이하 '시행계획'이라 한다)을 매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④ 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산재예방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포함하여야 한다.

⑤ (생 략)

③ -----
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
충청북도 -----
-----.

1. 고용노동부 등을 통한 도 산
업재해 발생현황 및 지역별·
업종별 등 실태 분석
2. 사업주 및 노동자에 대한 노
동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
3. 노동자들의 노동안전보건 증
진을 위한 지원 사업
4.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
건 사업에 필요한 예산
5. 산업재해 예방활동을 위한 노
동안전지킴이단 구성 및 운영
6.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
인정하는 사항

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시행
계획을 수립할 때 전년도 사업
시행 결과를 분석하여 반영하여
야 한다.

⑤ (현행과 같음)

관련법령 발췌

□ 산업안전보건법

제4조의2(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정부의 정책에 적극 협조하고, 관할 지역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제4조의3(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등)

-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 내에서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체 계획의 수립, 교육, 홍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-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- ③ 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다.

제5조(사업주 등의 의무) ① 사업주(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와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·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 및 제6조에서 같다)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근로자(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·배달 등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 및 제6조에서 같다)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·증진시키고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정책을 따라야 한다. <개정 2020. 5. 26.>

1.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
2.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
3.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
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발주·설계·제조·수입 또는 건설을 할 때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지켜야 하고, 발주·설계·제조·수입 또는 건설에 사용되는 물건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1. 기계·기구와 그 밖의 설비를 설계·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
2. 원재료 등을 제조·수입하는 자
3. 건설물을 발주·설계·건설하는 자

충청북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

1. 사업개요

- 노동안전보건 기본계획, 시행계획 등 관련 내용 정비하여 효율적인 충청북도 산업재해 예방활동 추진

2. 비용 발생 요인

- 노동안전보건계획 수립 관련 노동안전지킴이단 운영, 충청북도 노동안전보건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등 비용 소요

3. 관련조문

- 안 제6조(노동안전보건계획 수립)

4. 비용 추계 결과

가. 추계의 전제 : 추계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으로 함

나. 추계 결과 : 5년간 총370,400천원 소요될 것으로 예상

- 노동안전지킴이단 운영 : 290,400천원(도비 152,700, 시군비 137,700)
· 58,080천원(도비 30,540 시군비 27,540) x 5년 = 290,400천원
- 충청북도 노동안전보건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('27~'30) : 80,000천원(도비)
※ '23~'26 노동안전보건 기본계획 연구용역 비용(80,000천원) 참고

다. 재원조달방안 : 도비, 시군비

5. 연도별 비용추계서 : 붙임

6. 작성자 : 경제통상국 일자리정책과장 정 영 수

〈 연도별 비용 추계표 〉

(단위 : 천원)

구 분		1차년도 (2025년)	2차년도 (2026년)	3차년도 (2027년)	4차년도 (2028년)	5차년도 (2029년)	계
세 입							
세 출		58,080	138,080	58,080	58,080	58,080	370,400
노동안전지킴이단 운영		58,080	58,080	58,080	58,080	58,080	290,400
노동안전보건 기본계획 연구용역		-	80,000	-	-	-	80,000
재원 조달							
의존 재원	소 계						
	보조금						
	지방교부세						
자체 수입	소 계	30,540	110,540	30,540	30,540	30,540	232,700
	지방세	30,540	110,540	30,540	30,540	30,540	232,700
	세외수입						
지방채							
기 금							
특별회계							
특별회계							
특별회계							
시·군비		27,540	27,540	27,540	27,540	27,540	137,700
기 타 (차입금, 민자, 예비비 등)							